

大法院判例를 통해 본

工業所有權制度的 紙上分析

- …… 工業所有權制度的 紛爭은 어떠한 過程을 거쳐 解決되는가? 모든 紛爭……○
- ……이 그렇듯이 工業所有權制度도 大法院에서 解決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 …… 다만 地方法院 대신 審判所, 高等法院 대신 抗告審判所를 거쳐 大法院에……○
- …… 上告되는 것이 다를 뿐이다.……○
- …… 그러면 어떤 紛爭들이 大法院까지 上告되어 어떻게 解決되었는가? 이에……○
- ……本誌는 「判例研究」를 위하여 工業所有權 4法の 代表的인 大法院 判例를……○
- ……모아 分析해 보았다.……○ <編輯者 註>……○

◎ 第 14 回

權利對 權利의 權利範圍確認審判

※ 74.11.8 74후 58判決(權利範圍確認審判 74 抗告當 7號) 76.4.21 76후 14判決(權利範圍確認審判 74抗告當 7號)

無效審決이 確定되기까지는 그 效力을 否定할 수 없는 것이므로 登錄된 他人의 權利를 自己의 登錄權利의 範圍에 속한다는 審判을 請求할 수 없다.

職權으로 살피건대 意匠權의 權利範圍確認은 登錄된 意匠을 中心으로 어떠한 非登錄意匠이 積極的으로 登錄意匠의 權利範圍에 속한다거나 소극적으로는 이에 속하지 아니함을 確認하는 것으로 登錄意匠權의 效力이 미치는 범위를 具體的인 事實에 대한 關係에 있어서 確定하는데 불과하고 意匠自體의 內容範圍의 確定이라는 內在的要件의 존부를 確定하는 것이 아니므로(大法院 1968.11.26 宣告, 68후 38判決 參照) 상대방의 意匠이 登錄意匠인 경우에는 실사 그것이 請求人의 先登錄意匠과 同一 또는 類似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경우에 상대방의 意匠內容이 自己의 登錄意匠의 權利範圍에 속한다면은 곧 상대방의 登錄意匠權의 效力을 不定하는 結果가 되므로 먼저 상대방의 그 登錄이 意匠法

의 소정절차에 따라 無效審決이 確定 되기까지는 그 無效를 主張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大法院 1969.3.4 宣告, 68후 56 判決 및 1970.7.24 宣告, 79후 19 判決 各 參照)

그러므로 被審判請求人의 1973.4.11 出願 19 73.7.4 登錄 第 13755-1 類似意匠이 審判請求人의 1971.3.30 出願 1971.8.4 登錄 第 9805 意匠의 權利範圍에 속한다는 確認을 구하는 이 事件請求는 부적합한 것임에도 不拘하고 本案에 관한 類似與否의 判斷을 한 原審決은 違法하다 아니할 수 없다.

※ (76후 14) (74후 58)

職權으로 살피건대… 意匠權의 權利範圍確認은… 登錄意匠權의 效力이 미치는 範圍를 具體的인 事實에 대한 關係에 있어서 確定하는데 불과하고 意匠自體의 內容範圍의 確定이라는 內在的 要件의 존부를 確定하는 것이 아니므로(68후 38判決參照) 상대방의 意匠이 登錄의장인 경우에는 실사 그것이 請求人의 先登錄意匠과 同一 또는 類似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경우에 상대방의 意匠內容의 自己의 登錄意匠의 權利範圍에 속한다면은 곧 상대방의 登錄意匠權의 效力을 부정하는 結果가 되므로… 無效審決이 確定되기까지는 그 無效를 主張할 수 없다할 것이다(68후 56, 70후 19).

事實審의 專權事項

※ 80. 3. 11 79후 77判決(옷장登錄無效 78抗告 當 124號)

◎ 判決內容

上告理由 1, 2點을 함께 본다.

被審判請求人이 主張하는 바는 모두 事實審인 原審의 專權事項에 속하는 證據取捨와 事實認定을 들어 原審의 審決을 비난하는 취지로 밖에 보여지지 아니하는 바, 原審이 그 審決과 같은 事實을 認定하는데에 거친 探證의 과정에서 探證法則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밖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허물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다음 被審判請求人이 적법한 上告를 提起하였으나 上告장에 上告理由가 없고 또한 소정기간안에 上告理由書를 提出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上告는 모두 理由없으므로 이들 모두 기각한다.

抗告審決理由

公知共用된 비닐원단의 모양을 단순히 전용

또는 選擇 利用하여 옷장의 表面에 表現한데 불과함.

法院의 判斷과 다른 경우

※ 74. 11. 6 74 후 59判決(權利範圍確認審判. 74抗告 9號)

原審決의 판단취의는 本件(가)號의 문창호지는 所論 意匠登錄 第 13709號로된 意匠權과는 상이한 生産品이라는 것을 全體로 한 것 이므로 原審決判斷에 소른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認定할 수 없다(本願 1975. 1. 14宣告. 74후 60判決 參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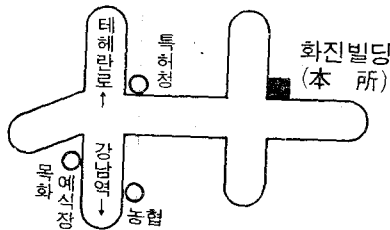
가사 소른 가처분 事件에 있어서의 判斷이 原審決 判斷內容과 다르다고 하여 그 事實만으로는 原審決이 당연히 違法한 것이라고 할수 없다 論旨는 이유없다. 原審決이 든 證據에 의하여 原審決의 所論 判斷事實을 수공못할바 아니며, 그 認定의 과정에 違法이 있음을 단정할 수 없고 論旨는 결국 原審決과는 상반된 입장에서 상반된 事實을 주장하는데 귀착되어 採擇될 수 없다. 論旨는 理由없다. <계속>

開業案内

崔博勇·金昞鎭 合同特許法律事務所

—開業日時：1988年 2月 13日 (오후 1時)—

辨理士 崔 博 勇·金 昞 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8 화진빌딩(201호)

T E L : (代) 553-7031~2, 554-4926

F A X : 555-6069

TELEX : CKIMSPT K 23949